3.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O 제출일자 : 2021년 10월 28일

O 제 출 자 : 송영헌 의원, 박갑상 의원, 박우근 의원, 윤기배 의원,

윤영애 의원, 황순자 의원

O 회부일자 : 2021년 11월 2일

O 상정일자 : 제287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2021년 12월 6일), 원안가결

2.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자 : 송영헌 의원)

□ 제안이유

O 환경의 중요성이 계속 강조되면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환경 교육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정하고자 현행 조례의 내용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O 환경교육의 정의를 「환경교육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으로 명확히 함(안 제2조)
- O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에 환경교육의 추진목표와 기본 방향 및 에너지 절약, 탄소 중립 등 친환경 대응 교육을 추가함(안 제4조)

3. 검토보고요지(보고자 : 전문위원 노인만)

○ 본 개정 조례안은 환경의 중요성이 계속 강조되면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환경교육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정하여 현행 조례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O 주요 내용으로는

- ▶ 안 제2조에서, 환경교육의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 「환경교육 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으로 규정함
- ▶ 안 제4조에서,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에 환경교육의 추진목표와 기본 방향 및 에너지 절약, 탄소 중립 등 친환경 대응 교육을 추가함
- ▶ 안 제6조에서, 학교환경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
- ▶ 안 제7조에서, 학교환경교육의 성과가 우수한 기관, 단체 등에 대한 포상 규정을 신설함

O 검토 결과

▶ 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목표로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태도·가치관 등을 기르는 환경 교육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에서의 환경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만큼 환경교육 실천에 필요한 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음

- ▶ 특히, 「환경교육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교육"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지속가능한 학교환경교육의 추진목표와 기본방향 설정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미래를 대비한 에너지 절약 및 탄소 중립 등 친환경 교육을 추가하여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음
- ▶ 또한, 학교환경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등의 자문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우수사례 공유 및 성과 달성을 위해 포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 만큼 실효성 있는 환경 교육 및 공감대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 다만, 최근 환경문제에 관한 이슈로 일시적인 관심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미래세대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환경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이 정립될 수 있도록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단계별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할 것이며,
- 학교환경교육을 통해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 및 역량을 기른 만큼 실천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바, 대구녹색학습원 활용 및 환경체험 활동, 환경동아리 활성화 등 일상 생활 속에 뿌리 내릴 수 있는 환경교육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O 없 음

5. 토론요지

O 없 음

6. 수정안요지

O 없 음

7. 심사결과

O 원안가결(재석위원 전원찬성)

8. 소수의견요지

O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O 없 음